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41호

건설신기술 지정

“지붕우수 활용을 위한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과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수엔테크(대표자 최상혁)		
	주 소	(우)10027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255		
	전화번호	02-2093-3485	팩스번호	02-2093-3488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진중공업(대표자 이병모)		
	주 소	(우)49001 부산시 영포구 태종로233(봉래동5가)		
	전화번호	02-450-8758	팩스번호	02-450-8118
신청인	법인명(성명)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임종선)		
	주 소	(우)06779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16길 22-6(양재동)		
	전화번호	02-3298-2600	팩스번호	02-577-5003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894호
- 명 칭 : 지붕우수 활용을 위한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과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 기술분야 : 토목 / 수자원/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지붕우수 활용을 위해 동일한 형상을 갖는 4개의 다공성 조립형 블록을 압수 맞물림 결합으로 조립하고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전후/좌우/상하 방향으로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저류조와 유입수 분산판, 침전 분리부,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여과 및 침전 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며, 저류된 우수는 조경 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고 지상과 연결된 점검통로가 있는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이다
- 신기술의 범위
지붕우수 활용을 위해 4개의 다공성 조립형 블록을 조립하고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전후/좌우/상하 방향으로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저류조와 유입수 분산판, 침전 분리부,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여과 및 침전 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는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시트설치 → 박스설치 → 맨홀 설치			
신기술 품셈	1. 시트설치			
	☞ 표준품셈 [공통 5-4-1 차수재공] 참조			
	[주] ① 보호시트 : 표준품셈 [공통 5-4-1 차수재공/부직포] 참조			
	② 차수시트 : 표준품셈[공통 5-4-1/HDPE시트] 참조			
	2. 박스 설치			
	(m ² 당)			
	구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인	0.15	
	보통인부	인	0.17	
	[주] ① 본 품은 터널박스조립 및 설치, 사이드 커버 설치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 맨홀 설치			
	(개소당)			
	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인	0.5
	보통인부		인	0.5
	크레인(타이어)	10ton	HR	2.0
	[주] ① 본 품은 전처리조 맨홀(900×900mm)설치기준이며, 미세여과처리장치, 점검 구, 유입수 분산판, 펌프 및 배관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43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